

■ 해사안전법 시행령 [별표 4의4] <신설 2023. 6. 20.>

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(제20조의3제1항 관련)

선박안전관리사 등급	필기시험 방식	면접시험 방식
1급	객관식 및 주관식	구술형
2급	객관식	구술형
3급	객관식	-